

창원지방법원 2021. 6. 3 선고 2020나593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유한회사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4. 15.

판 결 선 고 2021. 6. 3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. 7. 14. 선고 2019가단1178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12,559,4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,559,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12,559,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“이 법원에”를 “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”로, 제4쪽 제4행의 “이 법원의”를 “제1심법원의”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홍득관, 판사 서민아, 판사 석동우

별지

목 록

1.

(건물의 표시)

경상남도 거창군 호

【도로명주소】

경상남도 거창군 호 경량철골조 섬글지붕 단층 2층 근린생활시설

부속건물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화장실

호 조적조 및 판넬조스라브 및 판넬지붕 2층 주택

(토지의 표시)

경상남도 거창군 대 982㎡

2.

(토지의 표시)

경상남도 거창군 대 364㎡